

瑞山市大山勤勞者綜合福祉館運營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7.10.23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1997.10.24
- 라. 上程日字 : 1997.11. 1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地域經濟課長 徐晚錫)

가. 提案理由

-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정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을 고취시키고자 설치한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복지관의 시설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복지관은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및 교양강좌 등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복지관 운영은 시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규정함(안 제10조).
-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본 조례안의 제정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을 고취시키고자 설치한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발표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는 타지역 복지관 사용료징수 현황을 고려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적정사용료가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며,
- 수강료 및 보육료등은 개강후 본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제정과 동시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해야 될것이며, 기타 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없음

5. 討 論 : 없음

6. 少數意見 : 없음

7. 審査結果 : 원안 가결

제안번호	제 160호
의결년월일	1997. . . (제 회)

서산시대산근로지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7. 10. 23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60
----------	-----

제출년월일 : 1997. 10. 23.

제출자 : 서 산 시 장

제 안 이 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을 고취시키고자 설치한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가. 복지관의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복지관은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및 교양강좌등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복지관 운영은 시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규정함(안 제10조).

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참 고 사 항

-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현황
-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계획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 고취를 위해 설치한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복지관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다목적홀(예식장 겸용)
2. 소회의실
3. 소극장
4. 탁아소
5. 취미교실
6. 미용실
7. 체육실
8. 구판장
9. 식당
10. 노래방
11. 휴게실
12. 기타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및 교양강좌
2. 근로자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근로자의 휴식장소, 예식장, 생활편익시설등의 제공
4.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구판사업
5. 기타 근로자를 위한 제반사업

제4조(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다.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자
4. 기타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사용료등) ①복지관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복지관 시설의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1시간미만 사용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1시간이상 2시간미만일때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하고, 2시간이상 초과 사용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강료 및 보육료등은 서산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도 개시 1월 전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등) ①복지관 운영은 시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위탁운영케 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근로자종합복지관시설사용료

(사용시간 : 1회 2시간 기준)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시설명			
시 직 영 시 설	다목적홀 (예식장)	· 근로자, 생활보호대상자 : 20,000 · 일반시민 : 40,000	
	폐백실	무 료	
	신부대기실	무 료	
	소회의실 소극장	· 근로자단체 : 10,000 · 일반 단체 : 20,000	
부 대 시 설	영사기 마이크시설	· 근로자 : 5,000 · 일반단체·개인 : 10,000	
	냉·난방	· 20,000	

□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현황

가. 개요

- 위치 :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산 155-1번지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부지 2,977평, 연건평 1,100평)
- 건립기간 : '94. ~ '97
- 개관 : '97. 12.
- 총사업비 : 2,985백만원(국비 818, 도비 300, 시비 1,867)

나. 시설별 현황

구분 층별	시설명
지하1층(275평)	식당 100평, 기계실 90평, 노래방 25평, 부대시설 60평
지상1층(325평)	안내실, 구판장, 휴게실(40평), 체육실(100평), 부대시설(90평)
지상2층(260평)	관리실(20평), 미용실(10평), 탁아소(60평), 소회의실(70평), 취미교실(40평), 부대시설(60평)
지상3층(240평)	소극장(60평), 다목적홀(90평), 폐백실(10평), 신부대기실(5평), 부대시설(75평)

1997. 10.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세 부 운 영 계 획

서 산 지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세부운영계획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완공을 앞두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다수 근로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시설 현황

- 위 치 :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산 155-1
- 대 지 면 적 : 9,840㎡(2,977평)
- 건축 연면적 : 3,641㎡(1,1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비 고
2,985	818	300	1,867	○ 착 공 일 : '95. 6. 19 ○ 준공예정일 : '97년 12월

○ 층별시설내역

(단위 : 평)

층 별	면 적	시 설 내 역	비 고
계	1,100	13	
지하 1층	275	식당 100평, 노래방 25평, 기계실 90평 부대시설 60평	
지상 1층	325	안내실 5평, 구판장 90평, 휴게실 40평 체육실 100평, 부대시설 90평	
지상 2층	260	관리실 20평, 미용실 10평, 탁아소 60평 소회의실 70평, 취미교실 40평, 부대시설 60평	
지상 3층	240	소극장 60평, 다목적홀 90평, 폐백실 10평 신부대기실 5평, 부대시설 75평	

□ 관리운영 기본계획

○ 기본방향

-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기능에 의하여 다수 근로자에게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방법으로 운영

○ 관리운영세부계획

시설물관리

-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관리방안 : 대산출장소에서 운영관리

시설운영

- 기본원칙 : 복지관과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및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이 원칙이나
· 운영곤란시는 조례에 의거 근로복지공단 및 비영리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 가능
- 운영방안 : 대부분 시설은 임대위탁 운영하되 공공성 비중이 큰 일부 시설은 직영운영
· 직 영 : 다목적홀(예식장), 폐백실, 신부대기실, 소극장, 소회의실(5개시설)
· 임대.위탁 : 식당, 노래방, 구판장, 휴게실, 체육실, 미용실, 탁아소, 취미교실(8개시설)

내부시설

- 기본원칙 : 본시설은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유할수 없음
- 시설방안 :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내부의 기본 시설 설치후 운영

□ 시설별 세부운영계획

(단위 : 평)

층별	구분	시설 현황		활 용 방 안		운 영 체	비 고
		시설명	이용면적	사 업 구 분	사 업 종 류		
계		13	700				
지하1층	식 당 노래방	100 25	기타지원사업 체육문화사업	예식장등 시설이용자에 대한 급식 노래방 운영	임 대 임 대		
지상1층	구 판 장 휴 게 실 체 육 실	90 40 100	생활편의지원시설 체육오락사업시설 체육오락사업시설	편의상점, 특산물 판매장 근로자가족 노인교실운영(바둑, 장기) 체육단련, 볼링, 탁구, 에어로빅, 롤러스케이팅장	임 대 임 대 임 대		
지상2층	미 용 실 탁 아 소 소회의실 취미교실	10 60 70 40	직업교육시설 보육시설 교육장시설 취미교실	미용실, 피부관리실 영아반, 유아반, 유치원반 강의실, 회의실 음악, 사진, 서예, 미술, 컴퓨터, 미싱	임 대 임 대 직 영 임 대		
지상3층	소극장 다목적홀 (예식장) 패백실 산부대기실	60 90 10 5	문화공연시설 교육장시설 교육장시설 교육장시설	공연장, 영화관, 전시장 강의실, 대강당, 회의실, 다목적홀 예식장 부속시설 예식장 부속시설	직 영 직 영 직 영 직 영		

□ 타지역 근로자 복지관 사용료 징수현황

(사용시간 = 1회 2시간 기준)

구 분	시 설 명				비고
	에 식 장	패 백 실	소 회 의 실	부 대 시 설	
성남시 (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및 저소득층 : 3만원 (30분초과시 1만원) 일반 : 6만원 (30분 초과시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 1만원 저소득층 } 일반 :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단체 1만원 (초과 시간당 5천원) 일반단체 2만원 (초과 시간당 1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아노 1만원 드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3만원 - 일반 5만원 	
부천시 (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2만원 일반 단체 및 개인 4만원 (추가 시간당 오천원) 	무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5천원 일반 단체 및 개인 1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5천원 - 일반단체 1만원 피아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2천5백원 - 일반단체 5천원 영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5천원 - 일반단체 1만원 	
광양시 (직영 + 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생보자 2만원 일반 4만원 (초과시간당 100% 금액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생보자 1만원 일반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단체 : 1만원 일반단체 및 개인 : 2만원 (초과 시간당 50%금액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난방비 1회 2만원(초과 시간당 1만원 추가) 	
용인시 (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2만7천5백원 일반 5만5천원 (냉난방비 별도 드레스 무료대여) 	무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 2만7천5백원 일반 : 5만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아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2만5천원 - 일반단체 및 개인 5천원 마이크, 녹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5천원 - 일반단체 및 개인 1만원 영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5천원 - 일반단체 및 개인 1만원 	